

건설동향브리핑

제443호 (2013. 12. 30)

■ 건설 경기 동향

- 2014년 국내 건설수주 3.6% 증가, 건설투자 0.2% 증가 전망
- 2014년 부동산시장, 수도권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 전망

■ 정책 · 경영

- 건설 현장, 자재 대금 · 장비 대금 · 임금 체불 여전
- 중소기업 해외 진출, ODA · 다양한 J/V 통한 접근 필요

■ 정보 마당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건설기업에 영향 크지 않아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4년 국내 건설수주 3.6% 증가, 건설투자 0.2% 증가 전망

- 건설 수주액은 93.9조원에 불과해 건설 경기는 여전히 저조할 듯 -

■ 국내 건설수주 : 공공 2.0% 감소하나, 민간은 7.2% 증가할 전망

- 2013년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수주가 모두 부진해 1~10월 동안 전년 동기비 16.6% 감소했으며, 1~10월 수주액이 11년래 최저치인 68.6조원에 머물렀다.
 - 공공수주는 주택수주가 전년 동기비 41.4%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0.3% 감소했으며, 1~10월 수주액이 7년래 최저치인 24.9조원을 기록함.
 - 민간수주는 10월 누적치로는 4년래 최저치인 43.8조원으로 전년 동기비 23.7% 감소함. 세부적으로 토목수주가 7년래, 주택과 비주택 건축수주가 각각 4년래 최저치임.
- 2014년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수주가 전년비 2.0% 감소하나, 민간수주가 거시경제 및 수도권 주택 경기의 일부 회복으로 7.2% 증가해 전체적으로 전년비 3.6% 증가할 전망이다. 단, 수주액은 93.9조원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보임.

<국내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 동기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3년	1/4분기	-35.1	-9.0	-14.8	3.7	-56.7	54.3	-45.5	-69.2	-34.6	-47.6	-20.1
	2/4분기	-22.9	5.4	9.2	-0.8	-41.7	24.8	-33.5	-52.9	-26.4	-27.0	-25.7
	3/4분기	-4.4	4.2	5.1	3.1	-42.2	41.8	-8.9	-29.6	-4.4	-11.2	5.4
	10월	44.9	-5.8	30.7	-29.9	23.8	-41.0	77.4	119.8	68.3	87.2	36.4
	1~10월	-16.6	-0.3	1.6	-2.9	-41.4	22.0	-23.7	-47.1	-15.7	-18.4	-12.2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투자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의 전년도 감소세 영향으로 회복세 크게 둔화 전망

- 2013년 건설투자는 1/4~3/4분기 동안 전년 동기비 6.4%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임.
 - 1/4분기에 전년 동기비 2.4% 증가했고,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7.1%, 8.6% 증가
 - 이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건설수주의 기성 진척과 함께 추경예산의 편성, 4.1 및 8.28 대책 발표 등의 정책 효과에 기인한 결과임.
- 2014년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2013년 9월까지 감소세를 지속한 영향으로 회복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어 전년비 0.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2014년 부동산시장, 수도권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 전망

- 지방 소폭 하락, 전세 상승 양상 예상돼 -

■ 2013년 : 하반기 들어 회복세, 취득세 영구 인하 및 리모델링 수직 증축 완화 법안 통과

-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포함세를 보였으며, 전세 가격과 토지 가격은 각각 5.1%, 0.8% 상승함.
 -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은 상반기에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보임.
 - 지방 광역시 및 기타 지방은 2013년 11월 말 기준, 전년 말 대비 각각 2.3%, 1.6% 상승
 - 실거래가 거래량은 수도권(38.8%)과 지방(10.5%)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공급 지표는 인·허가, 분양,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분양과 착공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4.1 및 8.28 대책과 그 후속 대책 등의 정부 대책이 발표됨.
 - 연말 들어 취득세 영구 인하 및 리모델링 수직 증축 완화 등 일부 법안만이 통과됨.

■ 2014년 : 지역 및 상품에 따른 차별적 회복세 보일 전망

- 2014년 주택시장은 수도권 소폭 상승, 지방 소폭 하락, 전세 상승의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공급이 감소하는 등 반전이 예상됨. 다만, 경기 외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지방은 최근 2년 간 급증한 공급 물량의 부담과 주택담보대출의 확대 등에 따른 수요 여력의 소진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
 - 전세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의 증가와 매매시장의 소폭 회복으로 상승폭 축소 전망

<2013년 부동산시장 지표>

구분	가격			거래량		공급 물량			미분양 주택(호)
	주택		토지	주택(호)	토지(필지)	인·허가(호)	분양(호)	준공(호)	
	매매	전세							
물량	0.2	5.1	0.8	758,662	2,005,992	315,714	243,004	295,710	64,433
전년 대비(%)				21.0	10.1	-23.1	-4.0	-0.2	-13.9
기준 시점	1~11월		1~10월	1~11월	1~11월	1~10월	1~10월	1~10월	10월
자료	국민은행		온나라포털	국토부	온나라포털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주 : 미분양 주택은 전년 말 대비 증감임.

건설경기동향 및 전망 TFI

건설 현장, 자재 대금 · 장비 대금 · 임금 체불 여전

- 대부분의 체불이 하도급 업체에 의해 발생,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해야 -

■ 대금 체불의 실태 및 피해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를 공급한 자재 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정책 당국은 건설공사의 자재 대금 · 장비 대금 · 임금 등의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금 미지급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간 노무비, 자재 · 장비 대금의 체불 건수는 전체 186건으로 집계됨.
 - 이 중 원도급 업체가 25건(13%), 하도급 업체가 161건(87%)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체불이 하도급 업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노무비, 자재 · 장비 대금 체불 현황(2010년 2월 ~ 2011년 12월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원도급		하도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11	1,536,558	19	230,375	92	1,306,183
2011	75	768,966	6	221,380	69	547,586
계	186	2,305,524	25(13%)	451,755	161(87%)	1,853,769

주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공 중인 공사 현장 대상 조사 결과임.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장한다", 2012. 1. 20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자재 공급자 · 장비 대여업자 · 현장 근로자에 대해 자재 대금 · 장비 대금 ·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건설공사를 중지하고, 농성을 하며 공사 대금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하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도 지연됨으로써 공사 전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하도급자가 자재 대금·장비 대금·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한 자재 대금·장비 대금·노무비를 다시 지급함으로써 2번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이와 같은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의 도입 방안

- 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 간 공사 대금의 미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 함.
 - 대금 체불자는 지속적으로 다른 관련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표 요건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 가급적 신속히 대금 체불자를 공표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공표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공사 대금의 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두어 명단공개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3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을 감안, 재심의하여 공개 대상자를 최종 선정
 - 하도급 대금 등 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고위 공무원 3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2인, 교수 2인, 사회의 덕망 있는 자 3인 등으로 구성함.
- 공개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와 동일하게 체불 사업주의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이전 3년 간 임금 등 체불액임.
 - 공개 방법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의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 장소에 3년 간 게시하도록 함.

이의섭(연구위원 · eslee@cerik.re.kr)

중소기업 해외 진출, ODA · 다양한 J/V 통한 접근 필요

- 최근 3년 간 신고 건수 및 수주액 감소세 지속 -

■ 2013년 12월 현재, 전체 해외건설 신고 업체의 94.9% · 신고 수리 건수의 92.0%가 중소기업

- 2013년 12월 말 누적 기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중소기업은 5,765개 사, 신고 수리 건수는 9,014건¹⁾으로 집계되나, 최근 감소세를 보임.
 - 2011년에 1,099건이었던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 건수가 2012년에는 987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12월 말에는 743건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함.
 - 신고 업종별로 신고 업체의 분포를 보면, 전문건설업종이 3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반건설업종²⁾이 29.7%, 전기공사업종이 17.8%의 순을 나타냄(누적 기준).

■ 중소기업 해외 수주 2008년 이후 점차 하락, 2013년 12월 말 현재 32억 4,900만 달러 기록

- 2007년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최근 5년 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실적을 보면, 수주 누계액은 약 610억 달러, 수주 누계 건수는 5,850건, 총 진출 국가는 130개 국가, 총 진출 업체는 1,138개 사로, 2007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함.
 - 그러나, 2008년 이후 지금까지 5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12월 말 현재 32억 4,900만 달러로 2008년 대비 45% 수준에 그침.

■ 최근 일반건설업의 해외 진출 감소세, 전문건설업이 총 수주액의 40~60% 점유

- 총 누계액 기준으로는 일반건설업종이 257.8억 달러로 가장 많으나, 최근 수주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반면, 전문건설업종은 최근 3년 간 가장 많은 수주 실적 기록
 - 일반건설업은 2011년의 7.2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3.8억 달러로, 수주액이 52.8% 급감
 - 전문건설업은 2011년의 수주액이 20.8억 달러로 중소기업 총 수주액의 43.2%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 역시 21.1억 달러를 기록해 중소기업 총 수주액의 64.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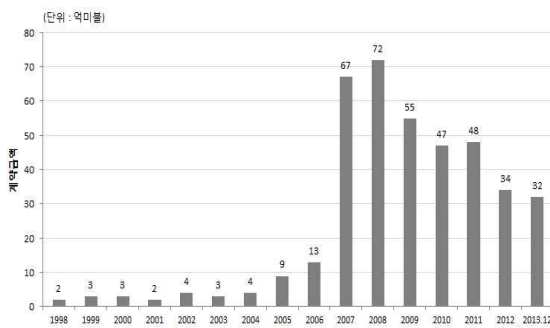
1) 한 업체가 복수로 신고 가능

2) 해외건설업 신고 업종으로서,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말함.

■ 중소기업의 산업설비 수주 비중 점차 증가, 2013년 12월 현재 총 수주액의 41.8%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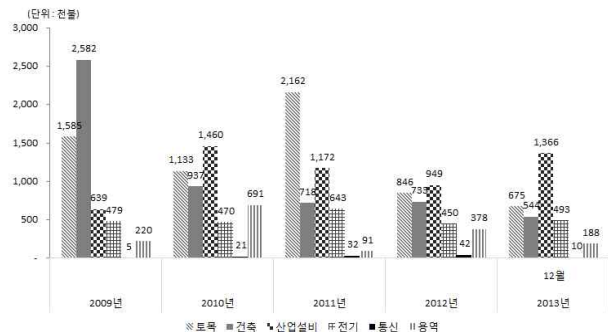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는 연도별로 공종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수주 누계액 기준으로는 건축 및 토목이 가장 많으나, 최근에는 산업설비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지금까지의 수주 누계를 살펴보면, 건축이 240.9억 달러(39.5%), 토목이 186.1억 달러(30.5%)로, 두 공종이 총 누계 수주액의 70%를 차지함.
 - 그러나, 2010년부터 산업설비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2010년에는 14.6억 달러로 연간 수주액의 31%를 차지하였음. 2013년 12월 현재는 13.7억 달러로 41.8%를 차지하는 반면, 토목은 20.4%(6.7억 달러), 건축은 16.5%(5.4억 달러)에 그침.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 추이>



주 : 2013년은 12월 24일까지임.
 자료 : 해외건설종합서비스(www.icak.or.kr)

<중소기업 공종별 수주 실적 추이>



주 : 2013년은 12월 24일까지임.
 자료 : 해외건설종합서비스(www.icak.or.kr)

■ ODA 사업 실적/경험 확보에 유리, 국내 대기업 · 公社 · 현지 기업과의 J/V 통한 진출 도모해야

-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한의 리스크하에서 해외시장에서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우선적인 대안은 국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통해 진출하는 것임. 이 경우 지원 자금이 원화로 지급되는 데 따르는 환(換)리스크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적은 사업임. 다만, 최근 비구속성화(Untied)에 따라 수주 환경이 다소 악화되는 추세임.
 - 이 외 사업의 경우 단독 진출보다는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Joint Venture)을 통한 진출 방안의 모색이 요망됨.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건설기업에 영향 크지 않아

-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건설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 분석 -

■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영향

-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노동 단체와 정부의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의 논쟁이 마무리되었음.

판결의 주요 요지

-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그러나, 소정 근로를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정기 상여금에 있어서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 조건을 정한 경우,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 대가에 대해 지급기로 한 금액’을 말함.
 - 주급, 월급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통상임금은 휴일 근무나 연장 및 야간 근무에 지급할 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등 특근 수당은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임.
-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오던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커지게 됨.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비중이 컸던 기업들의 실질 급여의 인상폭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휴일, 연장 근로가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될 것임.
 - 또한, 임금과 상여금, 휴일 수당을 근거로 산출되는 평균임금¹⁾에 따라 움직이는 퇴직금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음.

■ 건설기업에 미치는 영향

- 건설 현장의 기능인력 임금 체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됨.

1)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 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 총액으로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기능인력은 포괄임금역산제도²⁾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수당의 개념이 없어 통상임금상의 변화가 없음.
- 다만, 수당 개념이 있는 일부 직영 근로자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건설기업의 기술 및 관리 직원들의 임금 체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종의 상여 및 성과급으로 지급된 현금 급여는 전체 현금 급여에서 2011년에 12.0%, 2012년에 12.1%의 비중을 가지고 있음. 이는 전 산업의 2011년의 21.6%, 2012년의 21.3%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다만,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회의 ‘2013년 건설업체 임금·복리후생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22개 업체 중 15개 업체(68.2%)가 정기 상여금(명절 상여 포함, 성과급 제외)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준은 서로 다르지만 100~800%까지 지급(평균 423.1%)하고 있음. 따라서, 일부 업체들의 실질 임금 총액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임.
 - 또한, 건설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규직 외에도 건설 현장의 특성상 프로젝트별 계약직의 채용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임금의 체계도 정규직과 유사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문제는 이러한 정기 상여금 외에 건설 산업 내 고유하게 정착된 다양한 형태의 통상임금에 준하는 임금의 영향임.
 - 건설기업의 특성상, 현장 근로 수당, 해외 기본 수당 등과 근속 기간, 근속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들의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건설기업의 대응 방향

- 그동안 과도하게 복잡한 임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동계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함.
-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종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임금의 형태들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건비 파급 효과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현행 임금 체계 및 제도의 개선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영덕(연구위원-산업 · ydkim@cerik.re.kr)

2) 포괄임금역산제도는 초과 근로나 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사전 계약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가산 수당을 월급에 미리 반영하여 지급하는 임금 제도임.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 17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하도급 개선 협의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주계약자 공동 도급, 부당 특약 등 하도급 개선 현안 토론
12. 19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례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민생 경제 분과 월례 회의
12. 20	국회 김현미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임대차 등록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토론자로 참여
	국회 박상은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론회’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품셈 종합심의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원태 연구위원 참여 - 표준품셈 종합 심의
12. 26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부동산시장 전망 내부 세미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R&D 계획 수립 자문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윤영선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 연구원, 대한사회복지회에 성금 전달

- 연구원은 12월 23일(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한사회복지회 본회에 후원금을 전달하였음. 후원금은 영아임시보호시설의 영아들을 위해 쓰일 예정임.
- 연구원 임직원들은 연중 수시로 대한사회복지회 소속의 서울영아원을 찾아 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한국 건설기업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 원내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12월 19일(목), 연구원 및 대한건설협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열매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를 초빙하여 ‘주식시장에서 바라본 건설기업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주제로 원내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주요 내용 : 최근 주식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 투자자들의 건설업종에 대한 시각 및 주요 변수,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건설기업의 중·단기 리스크와 기회 요인 등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미국의 전성기는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로 본다. 전후의 베이비부머가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기 전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던 시기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 미국에 감히 대항하는 나라도 없는 때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가 그러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며 OECD 선진국에 진입한 때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인기는 당시에 대한 향수를 자극한 때문 아닐까.

건설산업도 주택 200만호 건설이 추진되었던 1990년대를 전후해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다. 그 후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산업은 부침을 겪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한 만큼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기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건설산업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5년 연속 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건설인들이 20년 전을 그리워하며 향수에 젖어 있는데 그러고만 있기에는 사정이 너무 긴박하다. 시장의 양적 축소와 질적 악화를 막는 동시에 산업의 이미지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풀어야 한다. 얼마 전 한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인들이 보는 건설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보다 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혹여 준수한 얼굴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잘못된 화장 탓이라는 아전인수 격의 해석을 경계한다. 칼 델 곳이 있다면 과감히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서 보았을 때 2013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제한된 재원을 놓고 벌인 복지와의 싸움에서 보기 좋게 나가떨어졌다, 무슨 사기 사건, 배임 사건, 뇌물 사건에 건설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는다. 분리 발주, 주계약자제도 등 업역 간 갈등은 줄어드는 시장에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번졌다. 다른 이 타할 입장은 아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반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단언컨대 2013년이 행복했던 한 해로 회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다가온 2014년은 미래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한 술에 배부를 것은 아니지만 건설산업의 제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로 기억될 수는 있지 않을까? 10년을 내다 보는 자정 노력으로 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상생을 바탕으로 업역 간 존중과 협조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국회에서는 건설산업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고 건설적 복지에 재정 지출이 확대 되었으면 한다. 건설산업은 민간투자의 확대에 화답하며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되기를 바란다.

오늘이 미래를 잉태한다. 20년 뒤 후배 건설인들이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며 한해를 보내야겠다. ‘응답하라 2014’의 주인공은 우리이며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우리의 아직 남은 선택이다. <CERIK저널, 2014. 1>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